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윤기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8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윤기섭,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숙자, 이종환,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38명)

1. 주문

- 소년범죄 예방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집단폭행, 성범죄, 무면허 운전, 절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끊이질 않고 사회적인 논의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들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고, 처분 결과가 범죄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음.

- 다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번도 바뀐적이 없는 반면에 SNS 등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모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을 위해 「형법」 및 「소년법」 개정 촉구를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형법」, 「소년법」.
- 다. 기타 : 없음.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법무부, 서울특별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형법」 1)에서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2)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이의 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14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등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2건, 2022년 1만 6,8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덧붙여 살인·강간·강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고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자 중 만 13세 비중이 무려 2만 2,202명으로 62.7%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높으며, 주요 선진국 들은 영국 10세, 캐나다 12세, 프랑스 13세이고 미국은 주별로 만 7~14세 사이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형법」 및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기준이 70여 년간 동일함에 따라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아이들의 성장 및 발육 배경이 다르다는 점과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체 발육이 좋아진 만큼 범죄가 더욱 과격하고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과 최근 마약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등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2명, 2021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15명, 2023년 8월까지 22명이 검거되는 등 연평균의 10배 이상 증가한 점을 토대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

이미 '22년 10월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통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률안이 계류

중3)임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의회는 소년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3) 현재 여·야 모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각각 7건)을 발의하여 국회 계류중('22.10.26.)